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지진방재정책과
	2017년 10월 10일(화) 조간 (10. 9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과	과 장 박 광 순 기술서기관 박 하 용
		연락처	044-205-5180 044-205-5181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

- 내년부터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까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확대 -

□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(5.8)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, 건축주 스스로 **내진성능 확보를 유도**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**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**한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**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일부개정법률안**이 **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**에서 **통과**됨에 따라,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**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**할 계획이다.

□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,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·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, **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**할 수 있게 된다.

○ 이를 위해,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**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** 등을 대상으로 **공공성을 확보**할 수 있는 기관을 **공모**하여 **인증기관으로 지정**할 계획이다.

□ 이외에도 「**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일부개정법률에서는**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'지자체'에서 '재난관리주관기관' 및 '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'까지 확대하고, 지진·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하였다.

※ **재난관리주관기관** :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
* 교육부, 과기정통부, 외교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

※ **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** :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에너지, 정보통신, 교통수송, 금융, 보건의료, 원자력, 환경, 식용수, 정부중요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

□ **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**은 "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"라며, "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."라고 밝혔다.

참 고 **지진 · 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의 주요내용**

개정안	주요내용
1 지진·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신설	• 지진·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지진·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 • 분과별 전문위원회 신설
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 신설	•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•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• 누구든지 지진안전 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• 인증을 받을 때 근거가 된 주요사실 변경되는 등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조항 신설	•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• 인증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4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 등	• '재난관리주관기관' 및 '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'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추가하여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도록 함
5 청문제도 신설	• 인증의 취소, 인증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
6 부칙	• (시행일)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• (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) 이법 시행전에 행정안전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